

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		처리기간
		15일
법인명(또는 상호)	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
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
전화번호		팩스번호
주소		
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범위		
<p>「저작권법」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 단체로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</p>		
<p>※ 첨부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2.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	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